

제출하는 곳	대행검사기관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선급법인)	처리부서	지역별 사무소
수 수 료	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름	처리기간	25일
유 의 사 항	☐ 벌칙 규정 -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☐ 예비검사대상 -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 ☐ 그 밖의 사항 -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·개조·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-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·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. -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.		